[목차]

•	가입자 유의사항	3
•	주요내용 요약서	4
•	보험용어 해설	6
•	무배당 모아변액연금보험(적립형) 약관	7
•	표준하체인수특약 약관	45
•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53
•	(별지) 약관 내 인용 조문	59

<<가입자 유의사항>>

□ 보험계약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1. 보험계약관련 유의사항

ㅇ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과거 질병 치료사실 등을 보험설계사 등에게 말로써 알린 경우는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반 드시 청약서에 서면으로 알리시기 바랍니다.
-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면질의서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 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특히 신중하여야 합니다.
- 이 상품은 실적배당형 변액보험으로 연금지급개시전에는 사망보험금 및 해지환급금 등이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하며, 해지환급금은 최저보증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보험차익(만기보험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한 이자소득세는 관련세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이 보험계약의 세제와 관련된 사항은 관련세법의 제개정이나 폐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보증지급기간까지 지급되지 않은 생존연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2. 해지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 보험계약을 중도해지시 해지환급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 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및 특약보험료를 차감한 후 운용·적립되고, 해지시에는 적 립금에서 이미 지출한 계약체결비용 해당액을 차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보험금 지급관련 특히 유의할 사항

-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보험 보장에 사용되는 보험료(위험보험료)와 보험계약체결비용, 계약관리비용 및 특약보험료를 제외한 금액만 편드에 투자되어 운영됩니다.
- 연금지급개시후에는 편드 운용실적이 반영되지 않으며,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연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연금지급개시전에 연금지급형태를 실적연금형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자적립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합니다.
-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보증합니다.
- 사망보험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보증합니다.

<<주요내용 요약서>>

1. 자필서명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설계사 등에게 말로써 알린 사항은 효력이 없으며, 전화 등 통신수단을 통해 가입하는 경우에는 서면을 통한 질문절차 없이 안내원의 질문에 답하고 이를 녹음하는 방식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므로 답변에 신중하셔야 합니다. 만약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별도로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회사가 이를 알았더라면 보험계약의 체결을 거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항을 말합니다.

3.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 15 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보험계약의 경우
-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보험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보험계약으로 보나, 상기 만 15 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청약철회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 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
-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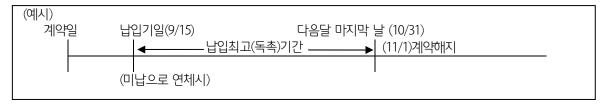
5. 계약취소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 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한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회사는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 2회 이후의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는 경우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보험료의 납입을 최고(독촉)하고, 그때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 다만, 당사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은 아래와 같이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마지막 날까지로 합니다.



7.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이 보험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8.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보험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보험용어 해설>>

ㅇ 보험약관

생명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ㅇ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

ㅇ 보험계약자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ㅇ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

※ 보험사고란,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고

ㅇ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

ㅇ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ㅇ 보험금

피보험자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ㅇ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ㅇ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ㅇ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나이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하지 않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선택하는 보험에서는 보험료 수준에 따라 보험금, 준비금(적립액) 등이 결정됨

ㅇ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금액

ㅇ 해지환급금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무배당 모아변액연금보험(적립형) 약관

무배당 모아변액연금보험(적립형) 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13
제 1조 【목 적】	
제 2조 [용어의 정의]	
제2관 보험금의 지급	15
제 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 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 6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제 7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제 8조 【보험금의 청구】	
제 9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제10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제11조【주소변경 통지】	
제12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제13조【대표자의 지정】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19
제14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제15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16조 【사기에 의한 계약】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20
제17조 【보험계약의 성립】	
제18조 【청약의 철회】	
제19조【연금지급형태】	
제20조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제21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제22조 【계약의 무효】	
	제23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24조 【보험나이 등】	
	제25조 【계약의 소멸】	
제	5관 보험료의 납입	23
	제26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27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제28조【납입된 보험료의 처리】	
	제29조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	
	제30조 【보험료 납입증지】	
	제31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제32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제33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34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제	6관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27
	제35조 【계약자적립금의 계산】	
	제36조 【펀드의 운용 및 평가】	
	제37조 [펀드의 유형]	
	제38조 【계약자의 편드자동재배분 선택】	
	제39조 【계약자의 편드 선택 및 변경】	
	제40조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	
	제41조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	
	제42조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제43조 【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제44조【특별계정의 폐지】	

제7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45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	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제46조【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제47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제48조【해지환급금】	
제49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50조 【보험계약대출】	
제51조 【배당금의 지급】	
제 8 관 분쟁의 조정 등	35
제52조 【분쟁의 조정】	
제53조 【관할법원】	
제54조【소멸시효】	
제55조 【약관의 해석】	
제56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제57조 【계약의 변동사항 통지】	
제58조【결산사항의 통지】	
제59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제60조【개인정보보호】	
제61조【준거법】	
제62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무배당 모아변액연금보험(적립형) 약관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하며,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포함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생존이나 사망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되며, 계약자는 다음에 정하는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야 합니다.

- 1. 보장계약
 -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 호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 2. 연금계약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2 호에서 정한 생존연금 및 같은 조 제 3 호에서 정한 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라.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마.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 가. 재해: <별표 2>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 나. 중요한 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 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 나. 표준이율: 회사가 최소한 적립해야 할 적립금 등을 계산하기 위해 시장금리를 고려하여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이율로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표준이율을 말합니다.
 - 다. 해지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 가.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 나.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가입한 날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로 합니다.
 - 다.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연금형 및 상속연금형은 종신, 확정연금형 및 실적배당형은 최종 연금지급일까지 입니다.
 - 라. 최소거치기간: 납입완료후 연금지급개시시까지 거치해야 하는 최소 기간(5년, 다만, 3년납은 7년)을 말합니다.
 - 마.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 바. 연계약해당일: 계약일부터 1년 단위로 지난 매년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년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사. 월계약해당일: 계약일부터 1개월 단위로 지난 매월의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월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5. 상품 관련 용어

- 가. 변액보험: 회사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자금을 조성하여 특별계정으로 운영하고, 그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액 등이 변동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 나. 일반계정: 보험업법 제 108 조(특별계정의 설정·운용) 제 1 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약을 제외한 계약에 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으로 회사는 '다'의 특별계정과 구분하여 재산을 관리하고 회계처리 합니다.

【일반계정】

- 특별계정 외에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생명보험상품 대부분을 차지하는 관리계정으로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처럼 관련법령으로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운용하도록 한 상품을 제외한 것입니다.

【조문 내용】

보험업법 제 108 조(특별계정의 설정·운용) 제 1 항

- ① 보험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준비 금에 상당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각각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 1. 「조세특례제한법」 제 86 조의 2에 따른 연금저축계약
 -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 16조 제 2 항에 따른 보험계약 및 법률 제 7379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부칙 제 2조 제 1 항에 따른 퇴직보험계약
 - 3. 변액보험계약(보험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보험계약을 말한다)
 -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험계약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다. 특별계정: 보험업법 제 108 조(특별계정의 설정·운용) 제 1 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하며, 이 보험의 연금개시전 보험기간과 제 23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 제 3 호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할 때 실적연금형을 선택한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실적연금형에 한하여 운용됩니다.

【특별계정】

- 계약자적립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합니다.
- 보험상품의 도입목적, 상품운용방법 등이 일반상품과 크게 상이하여 보험회사로 하여금 다른 보험상품과 구분하여 별도로 관리 및 운용을 할 것을 보험관련 법규에서 지정한 것으로 계정 상호간 계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주요 특별계정 상품으로는 퇴직보험, 연금저축, 변액보험 등이 있습니다.
- 라. 펀드: 계약자가 선택한 특별계정자산을 말합니다.
- 마. 계약자적립금: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 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평가 등에 의하여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제 50조(보험계약대출) 제 4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포함합니다.

[설명]

변액보험은 각 펀드별로 매일의 펀드 운용결과를 반영하여 매일의 기준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펀드에 투입되는 금액이 동일한 경우라도 그 처리기준일의 기준가격에 따라 매입 좌수에 차이가 있으므로 수익률이 다를수 있습니다.

- 바. 보험료: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하여 보험료라 합니다.
- 기본보험료

계약자가 계약시점에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를 말하며, 제1조(목적)에서 정하는 보장계약의 보험료와 연금계약의 보험료를 합하여 기본보험료라 합니다.

- 추가납입보험료

계약자가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 - 5」세(다만, 3년납의 경우 「연금지급개시나이 - 7」세) 연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료 납입주기와 달리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경과 기간에 따라 1회 납입 가능한 추가납입보험료 한도는 「해당월까지 납입한 기본보험료 총액(선납포함)의 200%

-이미 납입한 추가납입보험료의 합계」로 합니다. 다만, 시중금리가 최저보증이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추가납입한도를 상기의 한도의 90% 이내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납입기간 중에는 해당월의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경우에 한하여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는 경우에는 인출금액만큼 추가로 보험료납입이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는 매회 10만원이상 만원단위 금액으로 합니다.

- 사.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납입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중도에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경우 '자' 및 '카', 제 4 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 2 항 및 제 3 항, 제 23 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5 항에서 정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제 23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4 항 및 제 49 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 3 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또는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 아. 특약보험료: 계약자가 선택한 특약 계약에 해당하는 특약의 영업보험료를 말합니다.
- 자. 최저사망보험금: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동안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차.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특별계정에 의하여 운용된 투자실적과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의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 카. 최저연금적립금: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보장하는 연금개시시점의 최저한도의 계약자적립금으로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다만, 최저연금적립금은 연금을 수령하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타.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 특별계정에 의하여 운용된 투자실적과 관계없이 최저연금적립금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 파. 특별계정운용보수: '특별계정운영보수', '특별계정투자일임보수', '특별계정수탁보수' 및 '특별계정사무관리보수'를 합한 보수를 말합니다.
- 특별계정운영보수: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자산운용 및 관리 등을 위해 회사가 수취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 특별계정투자일임보수: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투자일임을 위해 자산운용사 등 투자일임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 특별계정수탁보수: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보관 및 관리, 자산운용 지시의 이행, 운용업무의 위규여부 등을 감시하기 위하여 신탁업자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 특별계정사무관리보수: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회계업무 및 기준가격 산정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일반사 무관리회사에게 지급하는 보수를 말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 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 1.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험금을 지급
- 2.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매년 생존연금을 지급(기간보증부 종신연금형, 금액보증부 종신연금형, 상속연금형)
- 3.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의 매년 계약해당일 :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매년 연금을 지급(확 정연금형, 실적연금형)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1 호 및 제 25 조(계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②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사망보험금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③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생존연금 및 같은 조 제3호의 연금은 연금지급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연금지급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저연금적립금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조문 내용】

의료법 제 3 조(의료기관)

-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1.30, 2011.6.7>
 -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의원

나. 치과의원

다. 한의원

-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부해산부산욕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 관을 말한다.
-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병원

나. 치과병원

다. 한방병원

라. 요양병원('정신보건법」제 3 조 제 3 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제 58 조 제 1 항 제 2 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 3 조의 2 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종합병원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의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 2 항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1.18>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 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이후에는 잔여 보증지급 금액을 지급합니다)
-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이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이후에는 잔여 보증지급 금액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보험수익자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 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

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제6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① 이 보험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연금액 및 연금지급개시 후 책임준비금에 적용하는 이율은 이 계약의 공시이율(이하 '공시이율'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다만, 제 23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 제 3 호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할 때 실적연금형을 선택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공시이율】

전통적인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이율이 장기·고정금리이기 때문에 시중금리가 급격하게 변동할 경우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을 고려하여, 시중의 지표금리 등에 연동하여 일정기간마다 변동되는 이율을 말합니다.

- ② 제 1 항의 공시이율은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 1일 적용합니다. 제 1항의 공시이율은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지표와 외부지표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장래 운용수익률, 향후 예상수 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공시기준이율의 90%~110%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 ③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2.5%,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2.0%를 적용합니다. 다만, 최초로 정하는 공시이율은 회사가 정하는 날부터 제 2 항에 따라 다음 공시이율을 정하는 날까지 적용합니다.

[최저보증이율]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적립금이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되며 공시이율이 1%인 경우(최저보증이율은 2%일 경우), 적립금은 공시이율 (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2%)로 적립됩니다.

④ 회사는 제 1 항 내지 제 3 항에서 정한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제7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제 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8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등)
 - 3.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등본(생존연금 또는 연금 지급시)
 -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9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8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회사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 생존연금 또는 같은 조 제3호 연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때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는 <별표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과 같이 계산합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하여 제 1 항의 지급기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

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 1. 소송제기
- 2. 분쟁조정신청
- 3. 수사기관의 조사
-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 5. 제 4 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 6. 제 $4 \times ($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 4항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제 3 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 ④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1항 및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 조사 요청에 동의하여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0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 3 조(보험금의 지급 사유) 제 1 호에 따른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 1 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표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표준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③ 연금지급 개시 후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까지 지급되지 않은 생존연금 또는 확정연금형의 경우 확정연금지급기간까지 지급되지 않은 연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수 있습니다.

제11조 【주소변경 통지】

-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12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수익자를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합니다.

제13조 [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로 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등

제14조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 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에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났을 때
 - 3.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 대해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 결과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4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④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의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 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사례】

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16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17조 【보험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표준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8조 [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때에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1.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
 - 2.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을 초과한 경우
- ②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19조 [연금지급형태]

① 계약을 체결할 때 제 1 조(목적) 제 2 호의 연금계약의 연금지급형태는 종신연금형으로 합니다.

-				
	구분			
		기간보증부 종신연금형	정액형	10년 보증, 20년 보증,100세 보증
	연금지급형태	(개인연금형, 부부연금형)	체증형(5%, 10%)	10년 보증, 20년 보증
		금액보증부 종신연금형		

- ② 계약자는 제 23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 제 3 호에 따라 연금개시전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일 전일까지 연단위 보험계약해당일로 연금지급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제20조 [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 ① 이 계약의 피보험자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과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의 피보험자는 피보험자 본인으로 합니다.
 - 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피보험자는 개인연금형의 경우에는 피보험자 본인으로 하고, 부부연금형의 경우에는 피보험자 본인(이하 '주피보험자'라 합니다)과 주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이하 '종피보험자'라 합니다)로 합니다. (이하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를 합하여 '피보험자'라 합니다)
- ② 부부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 종피보험자가 사망이외의 원인(이혼 등)으로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않으면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더 이상 가지지 않습니다.
- ③ 부부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 새로이 제1항 제2호의 종피보험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그 해당된 날로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연금지급개시이후 종피보험자가 사망한 이후 새로 이 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자는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제21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듕】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광기록매체 (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또한,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 1.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약판 및 그 설명문(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설명한 문서)을 읽거나 내려받게 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가 이를 읽거나 내려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 해당 약관을 드리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2.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 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때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정의)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정의)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취급)계약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③ 제 2 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 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위 제 1 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 ④ 제2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조문 내용】

전자서명법 제 2조(정의)

- 2. "전자서명"이라 함은 서명자를 확인하고 서명자가 당해 전자문서에 서명을 하였음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당해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 3. "공인전자서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추고 공인인증서에 기초한 전자서명을 말한다.
 - 가. 전자서명생성정보가 가입자에게 유일하게 속할 것
 - 나. 서명 당시 가입자가 전자서명생성정보를 지배관리하고 있을 것
 - 다.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서명에 대한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라. 전자서명이 있은 후에 당해 전자문서의 변경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22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2.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 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상실자 및 심신박약자의 설명】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라 함은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에 등의 심신장에로 인하여 사물 변별 능력 또는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말합니다.

제23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기본보험료
 - 2.보험료의 납입방법
 - 3.연금지급형태 및 연금지급개시나이
 - 4.계약자
 - 5.기타 계약의 내용
- ② 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회사의 승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 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는 계약자가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48조(해지환급금) 제3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제3항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경우 제5항, 제2조(용어의 정의) 제5호 '자' 및 '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감액 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 「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감액 전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및 감액이 발생한 경우에 제49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3항 및 상기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 ⑤ 계약자는 제 1 항 제 3 호의 연금지급형태 및 연금개시나이를 연금지급개시 전에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 다만,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후부터 연금지급개시까지 최소 5년(다만, 3년납의 경우 7년)의 거치기간을 두어야 하며, 변경 당시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나이를 단축할 수 없습니다.
 - 1. 연금지급형태

구분	내용			
	기간보증부 종신연금형	정액형	10년 보증, 20년 보증,100세 보증	
	(개인연금형, 부부연금형)	체증형(5%, 10%)	10년 보증, 20년 보증	
어그리그해대	금액보증부 종신연금형			
연금지급형태	확정연금형 (5년, 7년, 10년, 15년, 20년)			
	상속연금형			
	실적연금형(5년 이상 계약자가 선택한 연단위 기간)			

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 기간보증부 종신연금형, 금액보증부 종신연금형, 상속연금형: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 확정연금형, 실적연금형 :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최종 연금 지급일까지
- ⑥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하는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 ⑦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는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보험료 납입기간 중 제29조(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에 의해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기로 한 기간으로(이하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이라 합니다) 중에는 제1항 제1호의 기본보험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⑧ 계약자가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하는 경우 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시 안내한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해지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⑨ 회사는 제1항 제4호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

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제24조 【보험나이 등】

-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2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보험나이 계산 예시】

생년월일: 1988년 10월 2일, 현재(계약일): 2014년 4월 13일

⇒ 2014년 4월 13일 - 1988년 10월 2일 = 25년 6월 11일 = 26세

제25조 [계약의 소멸]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또는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개인연금형은 피보험자, 부부연금형은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의 모두 사망 등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26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하며,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②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 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1.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 2.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재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 니다.
- ④ 청약서에 피보험자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회사는 계약자가 주계약 기본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계약 기본보험료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제27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고, 추가납입보험료는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 및 납입한도 내에서 「연금지급개시나이-5」세(다만, 3년납의 경우 「연금지급개시나이-7세) 연계약해당일까지 수시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

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 포함)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 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납입기일]

계약자가 제 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 또는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종료 후 도래하는 월계약해 당일을 말합니다.

② 기본보험료를 선납할 경우에는 선납보험료는 당월분을 포함하여 12개월분 이하의 보험료를 선납할 때에 한하며, 선납보험료는 월납보험료의 배수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때 선납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이체사유가 발 생한 날까지 표준이율로 적립하고 월계약해당일에 당월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해당액(당월 기본보험료를 표준이 율로 계산한 이자 포함)을 특별계정으로 투입합니다.

제28조 [납입된 보험료의 처리]

- ①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된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납입보험료에서 회사 소정의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 이하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라 합니다)를 제39조(계약자의 편드 선택 및 변경) 제3항에 따라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
- ② 제 1 항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제1회 보험료의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낙된 경우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의 다음날로,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이 지난 후 승낙된 경우에는 승낙일로 합니다. 이 경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를 제1회 보험료 납입일부터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의 다음날까지는 표준이율로,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 계정의 투자수익률(선택펀드가 2개 이상인 경우 해당 펀드의 투입비율로 가중평균한 투자수익률)로 적립한 금액으로 합니다.
 - 2.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의 경우 납입기일의 전전일(前前日) 이전에 납입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로, 납입기일 전일(前日) 이후에 납입한 경우에는 「납입일+제2영업일」로 합니다. 이 경우 이체금액은 납입기일의 전전일(前前日) 이전에 납입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를 납입일부터 납입기일까지 표준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회사 소정의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납입기일의 전일(前日)에 납입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표준이율로 적립한 후 회사 소정의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하고 「납입일 + 제2영업일」까지 표준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하며, 납입기일 이후에 납입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에서 회사 소정의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납입일부터 「납입일 + 제2영업일」까지 표준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하며, 납입기일 이후에 납입한 경우에는 기본보험료에서 회사 소정의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납입일부터 「납입일 + 제2영업일」까지 표준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제2회 기본보험료의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체사유가 발생한 경우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의 다음날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하며, 이 경우 이체금액은 제2회 기본보험료 납입일부터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표준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회사 소정의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 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3.추가납입보험료는 「납입일 + 제2영업일」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로 합니다. 이 경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 투입 보험료를 납입일부터 「납입일+제2영업일」까지 「표준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제17조(보험계약의 성립) 제4항을 적용하며, 계약자가 그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제18조(청약의 철회) 제2항의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29조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

① 계약자는 계약일부터 보험료 납입기간별로 다음에서 정하는 시점이 지난 이후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이내에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납입 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동안 기본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를 납입하지 않습니다.

<u> </u>	
보험료 납입기간	납입일시중지 신청 가능 시점
3년납	신청불가
5년납	3년
7년납	4년
10년이상	5년

② 제1항의 경우 보험료납입 일시중지 이후의 납입기일은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만큼 연기되고, 그에 따라 보험료 납입기간은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만큼 연장됩니다.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중 납입하지 않은 기본보험료(특

약이 부가된 경우 특약보험료 포함)는 연기된 보험료 납입기일 및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간에 따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 특약의 납입기간은 연장되지 않습니다.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에 따라 연기된 보험료 납입완료 시점부터 연금개시나이까지의 기간이 최소거치기간 미만인 경우, 연금개시시점은 보험료 납입완료시점부터 최소거치기간이 지난 후 최초의 연계약해당일로 연기됩니다.

- ③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은 월계약해당일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월대체 공제액의 공제가 가능한 기간 이내로 합니다. 다만,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중 월대체공제액의 공제가 불가능할 경우 그때부터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은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④ 보험료납입 일시중지 신청가능횟수는 총 5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은 누적하여 36개월(기본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 개월 수 포함)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의 신청은 월단위로 가능합니다.
- ⑤ 계약자는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동안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은 그때부터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⑥ 회사는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종료일 15일 이전에 계약자에게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의 종료(보험료납입 일시중지 신청으로 인한 월대체공제액이 해지환급금에서 더 이상 공제되지 못한다는 사실 등) 및 보험료 납입에 사항을 서면, 음성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종료 후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① 제3항 및 제6항에서 월대체공제액은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중 월계약해당일의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으로 해당월의 보장계약 보험료 및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계약관리비용(기타비용) 제외)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월대체공제액 공제 예시】

예 1) 계약일: 8월 15일, 보험료 납입일: 매월 20일 예 2) 계약일: 8월 15일, 보험료 납입일: 매월 10일 →기간에 상관없이 매월 15일 월대체공제액 공제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 예시】

계약일: 2014년 11월 1일(5년납의 경우)

3년(36회 납입)후인 2017년 11월 1일부터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를 신청(월대체공제액이 매월 계약자적립 금에서 공제가능한 유지계약에 한함)

- 2018년 5월 1일에 회사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그때부터 보험료납입 일시중지 기간은 종료되며 보험료 납입이 중지된 기간(2017년 11월 1일~2018년 4월 30일까지 6개월)만큼 해당 납입 기일이 연기되어 2020년 4월 1일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이 종료된 2018년 5월 1일 이후 추가로 4회 보험료납입 일시중지제도 신청이 가능하며, 추가로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가능한 기간은 총 신청가능한 기간인 36 개월에서 기존 보험료납입 일시중지된 기간인 6개월을 차감하여 30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30조 [보험료 납입중지]

-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한 후 만 10년 이상 지난 계약에 한하여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래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계약유지를 원할 경우 서면에 의해 보험료 납입중지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으며, 특약의 보험료는 완납되어야 합니다.
- ② 보험료 납입중지 후 위험보험료 및 납입후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은 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에서 공제합니다.

제31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① 계약자는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기본보험료의 납입최고 (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50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기본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

- 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지환급금(해당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합니다)을 초과하는 때에는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④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납입 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4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중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⑥ 회사는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자동대출납입이 종료되었음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 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32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기본보험료 납입이 연체 중인 경우 또는 계약 자의 신청에 의한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중에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월 대체공제액을 충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으로 정하여 아래 사항에 대하여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여 드립니다.
 - 1.계약자(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에게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 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 2.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이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 조(정의)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동법 제2조(정의)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 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4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3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계약자의 보험료 납입연체 등의 사유로 해지된 계약에 대한 특별계정의 계약자적립금은 계약이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여 관리합니다.
- ② 제 32 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지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지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에 표준이율+1%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 일시중지기간 중에 납입하지 않은 기본보험료는 연체된 기본보험료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승낙한 계약의 경우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부활(효력회복)로 인하여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표준이율로 적립한 계약자적립금과 연체된 보험료 중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해당액(연체된 보험료에 대한 이자를 포함합니다) 등을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
- ④ 제3항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부활(효력회복) 승낙 후 연체된 기본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된 경우에는 「연체된 기본보험료 납입완료일 + 제2영 업일」

- 2.연체된 기본보험료의 납입을 완료한 후 제2영업일 이내에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체된 기본보험료 납입완료일 + 제2영업일」
- 3.연체된 기본보험료의 납입을 완료한 후 제2영업일이 지난 후에 부활(효력회복) 승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부활 (효력회복) 승낙일
- ⑤ 제 1 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 14 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 15 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 16 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 17 조(보험계약의 성립) 제 2 항과 제 3 항 및 제 26 조(제 1 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다만, 부활(효력회복)의 경우 제 1 회 보험료는 부활(효력회복)시의 보험료를 의미합니다.
- ⑥ 제2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 제14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15조(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34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한 해지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지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고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보험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지정된 보험수익자에게 하여야 합니다. 다만,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제6관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

제35조 [계약자적립금의 계산]

- ①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금 계산은 이전 계약자적립금과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에서 계약자적립금의 인출금액 및 매월 계약해당일에 월대체공제액(당월분의 보장계약의 보험료와 납입후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매일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회사는 특별계정에서 운용되는 계약자적립금에서 매일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 특별계정운용보수를 차감합니다.
- ③ 연금개시시점에 계약자적립금은 일반계정으로 이체되며(다만, 실적연금형을 선택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이체된 일반계정의 적립액은 공시이율로 적립됩니다. 이 때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2.5%,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2.0%를 최저한도로 적용합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실적연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계약자적립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제36조 [편드의 운용 및 평가]

- ① 변액보험의 편드는 특별계정별로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립적으로 운용되며, 자산운용실적이 계약자적립 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합니다.
- ② 제1항의 특별계정에서 관리되는 자산의 운용실적에 의한 이익 및 손실은 다른 계정의 자산운용에 따른 이익 및 손실에 관계없이 이 계약으로 귀속됩니다.
- ③ 계약자는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여를 할 수 없습니다.
- ④ 회사는 이 계약의 운용자산을 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변액보험의 유사한 성격의 운용자산별로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편드 통합사유, 통합일자, 기타편드통합 관련사항을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등록)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2조(정의) 제1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공고하거나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하며, 편드를 통합한 날이후 6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각 펀드의 결산서류를 회사 본점에 비치합니다.

【조문 내용】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9조(등록)

- ①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 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거나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9.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신문에 한정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 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신문"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산업·과학·종교·교육·체육 등 전체 분야 또는 특정 분야에 관한 보도·논평·여론 및 정보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같은 명칭으로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일반일간신문: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가행물
 - 나. 특수일간신문: 산업·과학·종교·교육 또는 체육 등 특정 분야(정치를 제외한다)에 국한된 사항의 보도·논 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하기 위하여 매일 발행하는 간행물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37조 [펀드의 유형]

- ①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펀드 유형 및 내용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1.채권형(5형):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 포함)을 포함합니다], 대출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95%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 2.인덱스(INDEX)혼합형(5형):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 동화증권(후순위채 포함)을 포함합니다], 대출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80% 이내로 투자합니다. 주식(코스닥 주식 등 포함), 상장지수투자신탁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30% 이내에서 투자하며, 상기의 주식에 투자함에 있어 한국주가지수200(KOSPI200지수) 등을 목표지수(Target Index)로 하여 인 덱스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할 수 있도록 운용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 3.주식혼합형(5형):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 (후순위채 포함)을 포함합니다], 대출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NAV)의 80% 이내로 투자하고, 주식 (코스닥 주식 등 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30% 이내에서 투자하며,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 4.안정성장형(5형)/안정성장형 II (5형): 주식(거래소 및 코스닥주식 포함, 관리종목은 제외)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50%이내를 투자하고, 채권[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후순위채권 포함)을 포함한다], 대출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우량 금융기관 등의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순자산의 50% 이상을 투자합니다.
 - 5.인덱스성장형(5형): 채권[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 (후순위채권 포함)을 포함한다], 채권형 수익증권, 대출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우량 금융기 관 등의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 등에 순자산의 50% 이상을 투자합니다. 주식 (거래소 및 코스닥주식 포함, 관리종목은 제외), 주식형 수익증권, 상장지수투자신탁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에 순자산(NAV)의 50%이내에서 투자하며, 상기의 주식에 투자함에 있어 한국주가지수200(KOSPI200) 등을 목표지수로 하여 인덱스지수의 수익률을 추종할 수 있도록 유용합니다.
 - 6.글로벌혼합형(5형): 국내·외 주식, 주식관련 파생상품, 주식형 수익증권(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에 순자산(NAV)

- 의 30%이내에서 투자하고, 나머지는 국내외 우량채권, 채권관련 파생상품, 채권형 수익증권, 대출 및 유동성 자산 등에 투자합니다. 다만, 주식 등에의 투자는 아시아 등 이머징 마켓(Emerging Market) 위주로 운용하되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합니다.
- 7.이머징브릭스주식성장형(5형): 신흥 이머징마켓과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등 BRICs 지역에 속하는 주식, 주 식관련 파생상품 및 수익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 포함) 등에 편드순자산(NAV)의 60%이내로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국내채권, 채권관련 파생상품(국채선물 등) 및 수익증권, 유동성 확보를 위한 유동성자산 등에 편드순자 산(NAV)의 40% 이상을 투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회사가 운용재산인 유가 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 또는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의 투자대상은 보험업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운용되고 그 관계법 령이 제·개정될 경우 대체 또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편드의 유형 이외에 새로운 편드가 추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미 가입한 계약자도 신규펀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펀드 추가로 인해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및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신규펀드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제38조 (계약자의 펀드자동재배분 선택)

-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편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일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단위 (6개월, 12개월 단위 중 택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선택한 펀드의 투입비율로 자동재배분 됩니다.
- ② 보험기간 중 펀드의 투입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펀드 투입비율에 따라 자동재배분 되며, 이 경우에도 계약일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단위(6개월, 12개월 단위 중 택일)로 자동재배분 됩니다.
- ③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④ 펀드자동재배분은 계약일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기간 단위(6개월, 12개월 단위 중 택일)로 실행되며,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다음 영업일에 실행됩니다.

【설명)

편드자동재배분이라함은 일정 주기마다 편드별 계약자적립금을 고객이 선택한 편드편입비율로 재배분하는 옵션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주기 펀드자동재배분, A펀드 50% + B펀드 50%를 선택한 경우에는 매 3개월마다 A펀드와 B펀드의 계약자적립금은 1:1의 비율로 재배분됩니다.

제39조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

- ① 계약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제37조(펀드의 유형)에서 정한 펀드 중 하나 이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펀드 가 2개 이상인 경우 펀드 각각에 대하여 펀드별 투입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머징브릭스주식성장형의 편입비율은 50%이내로 합니다) 매년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펀드별 투입비율의 변경을 회사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추가납입보험료는 계약자의 지정이 있을 경우 그 지정한 비율을 따라 해당 펀드로 투입되고, 지정이 없을 경우 펀드별 투입비율에 따라 해당 펀드에 투입됩니다.
- ③ 특별계정 투입보험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설정한 펀드별 투입비율에 따라 분산 투입됩니다.
- ④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매년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편드 적립금의 일부 및 전부 이전을 회사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편드 적립금 이전 시에는 10만원이상 이전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제4항에 따른 펀드 적립금의 이전을 요청 받은 경우에는 제44조(특별계정의 폐지)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 + 제5영업일」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현금을 이 전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 ⑥ 제38조(계약자의 편드자동재배분 선택)에 따라 편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한 계약자의 편드 변경요구는 편드자동재배분 실행 예정일 직전 제5영업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② 회사는 천재지변, 유가증권 시장의 폐쇄·휴장, 유가증권 등의 매각지연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5항에서 정하는 날까지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 및 향후 이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보험재산이 처분되는 날부터 제5영업일을 기준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릅니다.

제40조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

- ① 특별계정의 자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법에 의해서 평가하며 시가법은 각 특별계정별로 적용됩니다.
- ② 특별계정의 유가증권 평가방법 및 운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제41조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합니다.

1 자수

특별계정 설정시 1원을 1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합니다.

2.좌당 기준가격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 자리까지 계산하며 최초 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1,000좌당 1,000원으로 합니다.

다만,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산에서 특별계정운용보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및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예시]

예를 들어,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특별계정 투입보험료가 1,000 만원이며, 해당일자의 펀드기준가격이 1,250.00일 경우,

계약자 보유좌수는 1,000 만원 ÷ 1,250.00 X 1,000 = 800 만 (좌수)

이후 특별계정의 자산운용실적이 좋아져서 펀드 기준가격이 1,400,00으로 증가하였다면,

계약자 적립액은 800 만(좌수) X1,400,00 ÷ 1,000 = 1,120 만원으로 증가합니다.

제42조 【특별계정의 제비용 및 보수에 관한 사항】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8조(신탁계약의 체결 등)에 따른 보수, 그 밖의 수수료와 동법 시행 령 제265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에 따른 회계감사비용, 채권평가비용 및 유가증권 매매수수료 등을 특별계정자산에서 인출하여 부담합니다. 다만 자산운용 보고서를 작성·제공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조문 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88 조(신탁 계약의 체결 등)

- ① 투자신탁을 설정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신탁계약서에 의하여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1. 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상호
 - 2.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에 관한 사항
 - 3.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4. 이익분배 및 화매에 관한 사항
 - 5.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계산방법과 지급시기 방법에 관한 사항. 다만, 집합투자업자가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는 해당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6. 수익자총회에 관한 사항
 - 7.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수익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한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 190조 제 5항 본문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한다. <개정 2013.5.28>
 - 1.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2.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3.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제 2 항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하며, 제 2 항 후단에 따라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공시 외에 이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하는 경우(그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탁업자에게 해당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을 금전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265 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 ① 법 제 240 조 제 4 항에 따라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투자회사는 제외한다)이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감사의 동의(감사위원회가 설치된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말한다)를 받아야 하며, 투자회사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거나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감독이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기준은 금융위원회가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 ③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회계감사인의 권한은 법 및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 6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회계감사인은 집합투자재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1. 집합투자재산의 대차대조표
 - 2. 집합투자재산의 손익계산서
 - 3. 집합투자재산의 기준가격계산서
 - 4. 집합투자업자 및 그 이해관계인(법 제 84조 제 1항에 따른 이해관계인을 말한다)과의 거래내역
- ⑤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회계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협회, 그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및 그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에게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 ⑥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투자자가 회계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⑦ 회계감사에 따른 비용은 그 회계감사의 대상인 집합투자기구가 부담한다.
-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43조 (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

- ①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회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계약자에게 공지합니다.
 - 1.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등) 제2항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3.회사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 양수
 - 4.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② 회사는 변액보험 판매 후 매 3개월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8조(자산운용보고서의교부)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조문 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3 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② 법 제 89 조 제 1 항 제 3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란 발행인의 부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금융위원회가 부실자산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09.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88 조(자산운용서의 교부)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

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2.3>

-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따른 자산우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가.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 나. 회계기간의 말일
 - 다.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 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 2.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성립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해당 운용기간"이라 한다)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 3.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4.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회전율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 1 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시기 및 방법,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2.3>
-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44조 [특별계정의 폐지]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 1.해당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2.1개월간 계속하여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가 100억원에 미달하는 경우
 - 3.해당 각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
 - 4.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경우
- ② 회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계약자적립금 과 함께 제39조(계약자의 편드 선택 및 변경)의 규정에 따른 편드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편드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편드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유로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는 펀드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계약 자에게 청구하지 않으며, 연간 펀드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제7관 계약의 해지 및 해지환급금 등

제45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 ①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 이전에 한하여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48조(해지환급금) 제 3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3호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할 때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또는 실적연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22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지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48조(해지환급금) 제3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이후에는 서면동의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제46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①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 2.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48조(해지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47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48조(해지환 급금)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제48조 [해지환급금]

- ① 이 약관에 따른 해지환급금은 계약이 해지된 날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해지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지환급금의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③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제 23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3 항 및 제 45 조(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에 따라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지환급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지신청일+제 2 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
 - 다만,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3호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할 때 실적연금형을 선택한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동안의 실적연금형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을 포함합니다.
- ④ 제 1 항 및 제 3 항에도 불구하고 제 23 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 1 항 제 3 호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할 때 확정연금형 또는 상속연금형을 선택한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에 해당하는 해지환급금은 계약이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⑤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및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실적연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만 해당)의 해지환급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므로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⑥ 제4항의 해지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제6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정한 이율(다만,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2.5%,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2.0%를 최저한도로 적용합니다)로 합니다.
- ②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지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 드립니다.

제49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①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계약일 이후 1개월이 지난 후부터 보험년도 기준 연 12회에 한하여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습니다. 1회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은 인출할 당시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제외한 금액)의 50%를 최고 한도로 하고, 계약 후 경과기간 10년 이내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인출신청일 + 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인출금액은 10만원 이상 만원단위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보험년도】

당해연도 계약 해당일로부터 차년도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매 1 년 단위의 연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일이 2014년 8월 15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8월 15일부터 차년도 8월 14일까지 1년이 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의 일부를 인출하기 위해서는 인출 후 계약자적립금이 100만원 미만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한 경우 제2조(용어의 정의) 제5호 '자' 및 '키',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

규정) 제2항 과 제3항 및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4항에서 정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 인출 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 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u>인출 시 계약자적립금 인출금액</u> 인출 시 계약자적립금
 - (주) 「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해당 인출 전에 인출 및 감액이 발생한 경우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4항 및 상기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된 보험료를 말합니다.
- ④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 가능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 가능합니다.
- ⑤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계약자적립금의 인출로 인하여 장래의 보장계약의 보험료 및 계약관리비용 (유지관련비용)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중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경우의 해지환급금은 계약자 적립금 인출 당시의 해지환급금(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월대체공제액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⑦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한 경우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립되는 이자만큼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 또는 해지환급금에서 차감하여 지급하므로 계약자적립금 및 환급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적립액의 인출 예시】

예) 해지환급금 150만원, 적립액이 170만원일 경우

→ 최대인출 한도 적용시 해지환급금의 50%인 75만원이 최고한도이나, 인출 후 적립금이 170만원- 75만원 = 95만원으로 100만원 미만이 되므로 최대 70만원까지 인출이 가능합니다.

제50조 【보험계약대출】

- ① 계약자는 연금지급개시 이전에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이하 '보험계약 대출'이라 합니다)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3호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할 때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또는 실적연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연금지급개시 이후에도 이 계약의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 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지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제32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지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 ④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이루어졌을 경우 보험계약대출금액은 「신청일+제2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각각의 펀드 적립금 비율에 따라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 후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1.5%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로 적립합니다. 다만, 계약자에 의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상환이 있는 경우 상환금액은 상환일로부터 「상환일+제2영업일」까지 「표준이율」로 적립한 후, 「상환일+제2 영업일」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하며,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에서 제외됩니다. 이 때 상환금액의 펀드별 분배금액은 상환일 기준 펀드별 투입비율을 따릅니다.
- ⑤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은 「공시이율+1.5%」로 하고, 보험계약대출이율이 변경될 때에는 월 가 중평균한 이율로 합니다. 다만,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3호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할 때 실적 연금형을 선택한 경우에는 제4항에 준하여 연금개시전 보험기간과 동일하게 운용합니다.
- ⑥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제51조 [배당금의 지급]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제8관 분쟁의 조정 등

제52조 [분쟁의 조정]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53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54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지환급금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55조 [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56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57조 【계약의 변동사항 통지】

- ① 회사는 계약일부터 반기별로 보험계약의 변동내용을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혹은 보험기간 중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서면, 전화(음성녹취) 또는 인터넷 등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전자우편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추가적인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제58조 [결산사항의 통지]

회사는 사업년도 종료시 특별계정의 결산사항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드립니다.

제59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제60조 [개인정보보호]

-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61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62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1. 연금개시전 보험기간(보험계약일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기준 : 1구좌]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제 3 조 제 1 호)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 였을 때	600 만원 + 사망 당시 계약자적립금

2.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금을 지급합니다.

가. 기간보증부 종신연금형

① 개인연금형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생존연금 (제 3 조 제 2 호)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 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다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지급 - 정액형: 10년, 20년, 100세 보증 - 체증형(5%, 10%체증): 10년, 20년보증

② 부부연금형

급부명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생존연금 (제 3 조	주피보험자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 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 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 (다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 금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 지급 - 정액형: 10년, 20년, 100세 보증 - 체증형(5%, 10%체증): 10년,20년보증
제 2 호)	종피보험자	주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이후에 사망하고 종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시점부터 보증지급기간이후에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주피보험자의 보증지급기간 최종년도 연금 액의 동일액을 지급

나. 금액보증부 종신연금형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생존연금 (제 3 조 제 2 호)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 보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 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다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 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지급 다만,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다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다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과 이미 지급되어진 연금 총액과의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이미 지급되어진 연금 총액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음

3. 연금지급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 (제23조 제1항 제3호)

계약자가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 제3호에 따라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할 때 선택한 연금지급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금을 지급합니다.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기간보증부 종신연금형, 금액보증부 종신연금형, 상속연금형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확정연금형, 실적연금형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최종 연금 지급일까지

가. 기간보증부 종신연금형

① 개인연금형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생존연금 (제3조 제2호)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 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다만, 연금 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 기준 으로 계산한 금액 지급 - 정액형: 10년, 20년, 100세 보증 - 체증형(5%, 10%체증): 10년, 20년보증

② 부부연금형

급부명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생존연금 (제 3 조 제 2 호)	주피보험자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 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 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다만, 연금 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 기준 으로 계산한 금액 지급 - 정액형: 10년, 20년, 100세 보증 - 체증형(5%, 10%체증): 10년,20년보증
	종피보험자	주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이 후에 사망하고 종피보험자가 연 금지급개시시점부터 보증지급	주피보험자의 보증지급기간 최종년도 연금액의 동일액을 지급

기간 이후에 매년 보험계약해당	
일에 살아있을 때	

나. 금액보증부 종신연금형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생존연금 (제3조 제2호)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 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다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 지급다만,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액(다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과 이미 지급되어진 연금 총액과의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이미 지급되어진 연금 총액이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다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일시금을 지급하지 않음

다. 확정연금형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연금 (제3조 제3호)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계약 자가 선택한 확정연금지급기간 (5년, 7년, 10년, 15년, 20년) 의 매년 보험계약해당일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다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계약자가 선택한 확정연금지급기간에 따라 계산한 금액 지급

라. 상속연금형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생존연금 (제 3 조 제 2 호)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 험자가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다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다만,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연금계약의 적립액」을 지급)

마. 실적연금형

급부명	지급사유	지급금액
연금 (제 3 조 제 3 호)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연금 지급기간(5년 이상 계약자가 선택한 연단위 기간)의 매년 보 험계약해당일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다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약자(연금지급개시 이후에는 보험수익자)가 선택한 연금지급횟수에 따라 지급사유 발생일 현재 계약자 보유좌수를 나누는 방식으로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

4. 용어의 설명

① 「계약자적립금」은 특별계정 투입보험료에서 매월 월대체공제액(당월분의 위험보험료 및 납입후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최저사망적립금 보증비용,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 특별계정운용보수를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적립금의 인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계약자적립금에서 계약자적립금의 인출금을 차감하

- 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의 보장계약의 보험료 및 납입후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은 월계약해당일에 계약자적립금에서 차감합니다. 또한, 보험료납입 일시중지기간 중에는 계약의 유지를 위해 월계약해당일에 적립액에서 월대체공제액을 차감합니다.
- ②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제5호 '사'에서 정한 보험료를 말하며 계약자가 납입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중도에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경우 제23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4항 및 제49조(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3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를 말합니다.
- ③ 「연금계약의 적립액」이란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다만,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생존연금 및 연금 발생 분(납입후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포함)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④ 생존연금 및 연금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므로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매년 지급되는 생존연금 및 연금도 변경됩니다.
- ⑤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이후의 공시이율이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의 해당년도 연금액은 직전년도 연금액과 동일하나(종신연금형의 체증형 제외),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이후의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직전년도의 연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⑥ 종신연금형의 체증형인 경우 체증기간은 10년이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이후의 공시이율이 연금개시시점의 공시이율과 계속 동일한 경우의 해당년도 연금액은 직전년도 연금액을 체증률(5%, 10%)로 체증한 금액과 동일합니다. 다만,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이후의 공시이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직전년도 연금액을 체증률(5%, 10%)로 체증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②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전에 선택한 보증지급기간[정액형(10년, 20년, 100세), 체증형(10년, 20년)]동안 연금개시후에 생존연금의 지급을 보증하며, 연금지급 개시 후 보증지급기간[정액형(10년, 20년, 100세), 체증형(10년, 20년)]까지 지급되지 않은 생존연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다만, 정액형의 100세 보증은 주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⑧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정액형(10년, 20년, 100세), 체증형(10년, 20년)] 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정액형(10년, 20년, 100세), 체증형(10년, 20년)]까지 지급되지 않은 생존연금을 생존연금지급일에 드리거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⑨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후 확정연금지급기간(5년, 7년, 10년, 15년, 20년)까지 지급되지 않은 연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⑩ 확정연금형의 경우 확정연금지급기간(5년, 7년, 10년, 15년, 20년)중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확정연금지급 기간(5년, 7년, 10년, 15년, 20년)까지 지급되지 않은 연금을 연금지급일에 드리거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 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① 실적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 후 연금지급기간(5년 이상 계약자가 선택한 연단위 기간) 동안에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각 연금지급횟수까지의 미지급된 각 연금액을 연금지급해당일에 드립니다. 다만, 잔여 지급 연금을 일시금으로 지급을 원할 경우 사망 당시의 연금지급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 ② 연금지급형태 중 실적연금형을 선택할 경우 연금개시후 보험기간에도 연금개시전 보험기간에 운용되는 특별계 정(펀드)에서 계속하여 계약자적립금을 운용하여 5년 이상 계약자가 선택한 연단위 기간 동안 계약자의 보유좌 수를 나누어 연금으로 지급합니다.

연금지급액(납입후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 포함)

- =(연금지급일 현재 계약자 보유좌수 / 잔여연금지급횟수)
- × 연금지급일 현재 기준가

예를 들어 연금지급 개시시점 현재 1억좌를 보유하시고, 5년간 매월 단위 지급을 신청한 경우

<u> </u>							
	구분	1회	2회	3회	4회	5회	•••
	보유좌수	100,000,000	98,333,334	96,666,668	95,000,002	93,333,336	:
	잔여연금지급횟수	60	59	58	57	56	:
	1000좌당 기준가예시	1,100	950	1,050	1,100	1,200	•••
	연금지급액	1,824,212	1,575,456	1,741,293	1,824,212	1,990,049	•••

^{*} 상기 연금액 예시표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준가, 보유좌수, 연금지급액을 가정하여 작성된 것으로 실제 연금 지급과는 관계 없습니다.

- ** 매회 지급되는 연금액은 특별계정 운용실적에 따른 기준가가 적용되므로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매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표의 연금지급액은 납입후 계약관리비용(유지관련비용)을 제외하고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연금지급액을 예시한 것 입니다.
- ③ 실적연금형의 경우 계약자(연금지급개시 이후에는 보험수익자)가 연금 지급을 요청한 날을 연금지급 이체사유 발생일로 하며,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하여 보험수익자에게 연금을 지급합니다.
- ⑩ 실적연금형의 지급주기는 매년 단위를 원칙으로 하되 1개월 단위, 3개월 단위 또는 6개월 단위로 할 수 있으며, 지급 주기는 연금지급 기간 내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⑤ 실적연금형의 경우 계약자(연금지급개시 이후에는 보험수익자)는 5년 이상의 범위에서 1년 이상 연단위로 연금 지급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지급개시 이후에 연금지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때 에는 신청일 현재 실적연금형의 연금지급 책임준비금이 120만원 이상이고 연금지급기간이 끝나는 날이 1년 이 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 (®) 실적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전 보험기간과 동일한 특별계정에서 운용하는 경우, 기준가 산정시 매일 차감되는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및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은 매년 계약해당일까지 이 보험의 표준이율로 일반계정에서 적립한 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특별계정으로 이체하여 계약자의 보유좌수를 증액합니다. 다만, 매년 계약해당일 이전에 보험계약의 해지, 피보험자의 사망 등으로 보험 계약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일까지의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실적연금형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및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 적립금액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① 생존연금 및 연금을 매월, 3개월, 6개월로 나누어 지급할 경우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계산한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이후의 『공시이율』은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 1일 적용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의 최저보증 이율은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2.5%, 10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2.0%를 적용합니다.
- ⑩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는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개인연금형은 피보험자, 부부연금형은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의 모두 사망 등으로 인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재해분류표

1.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①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S00~Y84)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에서 규정한 감염병

2.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으로 발병하거나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 ②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
 -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X50)
 -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X52)
 - 식량부족(X53)
 - 물 부족(X54)
 - 상세불명의 결핍(X57)
 - 고의적 자해(X60~X84)
 - 법적 개입 중 법적 처형(Y35.5)
- ③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Y60~Y69)'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Y83~Y84)는 보장)
- ④ '자연의 힘에 노출(X30~X39)'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⑤ '우발적 익사 및 익수(W65~W74),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W75~W84),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질(W4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
-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U00~U99)에 해당하는 질병
- ※ () 안은 제 6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2010-246호, 2011.1.1. 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 7차 개정 이후 상기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1 및 2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되는 것으로 합니다.

【조문 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정의)

- 2. "제 1 군감염병"이란 마시는 물 또는 식품을 매개로 발생하고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
 - 가. 콜레라
 - 나. 장티푸스
 - 다. 파라티푸스
 - 라. 세균성이질
 - 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 바. A 형간염
-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제9조 제2항 및 제48조 제2항 관련)

구분		기간	지급이자
사망보험금 (제3조 제1호)	지급기일의 다음 날	부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사유가 발생 한 날의 다음 날	보험기간 만기일(다만, 이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 는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날) 이내	표준이율
생존연금 및 연금 (제3조 제2호 및 제3호)	부터 청구일까지 의 기간	보험기간 만기(다만, 이 계약이 더 이 상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않게 된 날) 이후	- 1년 이내: 표준이율의 50% - 1년 초과기간: 1%
	청구일의 다음 날투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지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	- 1년 이내: 표준이율의 50% - 1년 초과기간: 1%
(제48조 제1항 및 제4항)	청구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지환급금 (제48조 제3항)	청구일 + 제2영업일	일의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 1. 생존연금 및 연금은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7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부터 청구일까지의 기간은 표준이율을 적용한 이자를 지급합니다.
- 2. 상기 표준이율은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는 「보장계약의 표준이율」,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에는 「공시이율」을 말합니다. 다만,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실적연금형의 경우 「보장계약의 표준이율」을 말합니다.
- 3. 지급이자는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금리연동형보험은 일자 계산합니다. 다만, 지급이자는 제54조(소멸시효)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4.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표준하체인수특약 약관

표준하체인수특약 약관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특약의 체결】

제 4조 【특약의 내용】

제 5 조 【특약의 부가조건】

제6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제7조 [특약내용의 변경]

제8조 [주계약 약관의 준용]

표준하체인수특약 약관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생존이나 사망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2.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3.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4. 주계약: 기본이 되는 보험계약으로 주된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 5. 해당계약: 이 특약의 적용을 받는 주계약 또는 특약을 말합니다.
 - 6. 재해 : <별표 1>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를 말합니다.
 - 7. 보험기간 :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제 3 조 【특약의 체결】

- ① 이 특약은 해당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진단결과 회사가 정한 표준체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주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② 특약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제 4 조 【특약의 내용】

이 특약은 피보험자의 위험도가 높아 해당계약의 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기간 중 위험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제 5 조 【특약의 부가조건】

- ① 이 특약에 따라 부가하는 계약조건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위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다음 중 한가지의 방법으로 부가합니다.
 - 1. 할증보험료법

할증위험률에 따른 보험료와 표준체 보험료와의 차액을 특약보험료라 하며 해당계약을 체결할 때 위험의 정도에 따라 표준체 보험료에 회사에서 정한 특약보험료를 더하여 납입보험료로 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할증위험률)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초과위험에 대해 적용되는 위험률로 일반 적으로 표준체 대비 높은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2. 보험금감액법

계약일로부터 회사가 정하는 삭감기간 내에 피보험자에게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할 때에 정한 삭감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경과기간	기준	삭감 기간				
6백기년	기판	1년	2년	3년	4년	5년
1년미만		50%	30%	25%	20%	15%
1년이상 2년미만			60%	50%	40%	30%
2년이상 3년미만	해당계약에서 정한			75%	60%	45%
3년이상 4년미만	지급보험금 -				80%	60%
4년이상 5년미만						80%

그러나, 그 보험사고의 발생원인이 재해로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삭감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의 규정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상기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3. 나이가산법

할증위험률에 따른 보험료가 표준체 보험료와 가장 가까운 나이간의 차이를 연증수라 합니다. 즉, 어떤 결함을 가진 피보험자의 위험지수가 실제 n세 높은 나이의 표준체와 같은 위험률을 나타낸다고 인정할 때 n년 중이라 칭하고 n세 높은 나이의 표준체 보험료를 받아들이는 방법입니다.

- 4. 나이가산법과 보험금감액법을 병용할 수 있습니다.
- ②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계약에 부가된 조건을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제6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주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주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주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③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도 면제됩니다.

제 7조 [특약내용의 변경 등]

- 이 특약은 주계약의 약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 1. 보험기간 또는 보험료 납입기간의 변경
 - 2. 감액완납 또는 연장보험으로의 변경

제8조 [주계약 약관의 준용]

이 특약에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에 따릅니다.

<별표1>

재해분류표

주계약의 <별표 2> '재해분류표'와 동일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약관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57
제 1 조 【목적】 제 2 조 【용어의 정의】	
제 2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57
제 3 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제 3 관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사항	57
제 4 조 【적용대상】	
제 5 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제 6 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제 7 조 【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절차】	
제8조 [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	
제 4 관 기타사항	58
제 9 조 【준용규정】	

지정대리청구서비스특약

제 1 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생존이나 사망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 가. 계약자 :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 나. 보험수익자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 라.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마. 주계약: 기본이 되는 보험계약으로 주된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제 2 관 특약의 성립과 유지

제3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부가됩니다.
- ② 제4조(적용대상)의 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 3 관 지정대리청구에 관한 사항

제4조 【적용대상】

이 특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주계약 및 특약에 적용됩니다.

제5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① 계약자는 주계약 및 특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1명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6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 지정)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1.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 2. 피보험자와 동거하거나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 4 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6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 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 2. 보험증권

- 3.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제7조 【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8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구비서류 및 제4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4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8조 【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 4. 피보험자의 인감증명서
- 5.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6.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 4 관 기타사항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약관 내 인용 조문

아래 내용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참고적으로 제공되는 내용으로서, 추후 법령 내용은 개정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www.moleg.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 개인정보보호법

1-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1845 호, 시행 2013.8.29]

제 1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제한)

-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국가의 안보 및 기밀에 관한 정보
 - 2.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구개발 정보
 - 3.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그 밖에 신용정보와 관계없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
 - 4. 확실하지 아니한 개인신용정보
 - 5.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집이 금지된 정보
 -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 32 조제 1 항에 따른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 32 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서면

- 2. 「전자서명법」 제 2 조제 3 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전자문 서를 말한다)
-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의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 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

절차를 거친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 ②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인으로부터 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해당 개인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③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 2 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 려는 자가 제 2 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 항부터 제 3 항 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신용정보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 관과 서로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2.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제 17 조제 2 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 3.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 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 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 o
 - 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6.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 5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신용 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 7.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8.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 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9.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 ③ 제 4 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 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 이와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공시할 수 있다.
- ⑥ 제 4 항제 3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⑦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 는 자의 신원(身元)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 ⑧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 1 항에 따라 미리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제 33 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 거래관계(고용관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설정 및 유지 여 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1. 개인이 제 32 조제 1 항 각 호의 방식으로 이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 한 경우
- 2.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 는 경우(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 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3. 제 32 조제 4항 각 호의 경우
- 4. 그 밖에 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 25155호, 시행 2014.2.14]

제 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 · 활용에 대한 동의)

- ① 법 제 32 조제 1 항에서 "대출, 보증에 관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란 제 2 조제 2 항의 개인에 관한신용정보를 말한다. 다만,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조회회사에 제공하려는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는 제외한다.
 - 1. 제 2 조제 1 항제 3 호의 신용정보
 - 2. 제 2 조제 1 항제 5 호 각 목(마목 및 사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신용정보. 다만, 같은 호 라목의 경우에는 체납 관련 정

보. 자목의 경우에는 신용회복정보만 해당한다.

-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 32 조제 1 항에 따라 해당 개인 으로부터 동의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 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 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 중기관은 제외한다)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 ③ 법 제 32 조제 1 항제 3 호에 따른 개인비밀번호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밀번호로 한다.
 - 1. 해당 개인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 조제 2 호의 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에게 등록한 비밀번호
 - 2. 개인신용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하려는 신용정보제공·이 용자로부터 해당 개인 명의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 하여 받은 비밀번호
 - 3.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개인비밀번호
- ④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 32 조제 1 항제 4 호에 따라 유무선 통신을 통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 2 항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한다.
- ⑤ 법 제 32 조제 2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정보" 란 제 2 조제 2 항의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는 제외한다.
 - 1. 제 2 조제 1 항제 3 호의 신용정보
 - 2. 제 1 항제 2 호에 따른 정보. 다만, 제 2 조제 1 항제 5 호라목에 따른 체납 관련 정보 중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⑥ 법 제 32 조제 2 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 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 의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3.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의 효력기간
- ⑦ 법 제 32 조제 3 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 관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해당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를 서면, 전자적 기록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⑧ 법 제 32 조제 4 항제 4 호에서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말한다.

- 1.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하거나 채권추심회 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 2.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 3. 행정기관이 인가·허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용조회 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 4. 해당 기업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 기업의 대표자 및 제2조제1 항제3호의 각목에 해당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목적
- 5. 제 21 조제 2 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또는 어음 · 수표 소지인 이 어음 · 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변제 의사 및 변제자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어음 · 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 ⑨ 법 제 32 조제 5 항 본문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알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알리는 방법은 서면, 전화(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 전자우편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 1. 법 제 32 조제 4 항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 및 제 8 호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30 일부터 60 일까지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알릴 것
 - 2. 법 제 32 조제 4 항제 4 호에 따른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30 일부터 60 일까지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알릴 것. 다만,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6조제 2 항 및 제 3 항에 따라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수임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수임사실을 통보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 3. 법 제 32 조제 4 항제 5 호부터 제 7 호까지 및 제 9 호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60 일부터 180 일까지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 여 고시하는 기간 이내에 알릴 것
- ⑩ 법 제 32 조제 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그 공시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에의 게재 또는 사무실·점포 등에서의 비치·열람 등의 방법에 따른다.
 - 1. 신용정보회사등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신용정보주체의 주소 또는 거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 2. 신용정보의 특성, 제공 대상자, 제공 경위 및 제공 목적 등

- 을 고려하여 공시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법 제 32 조제 4 항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 및 제 7 호에 따른 정보만 해당한다)
- ① 법 제 32 조제 6 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 5 조제 1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 ② 법 제 32 조제 6 항에서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제 공받는 자의 신용정보 관리 · 보호 체계를 말한다.

2. 개인정보보호법

[법률 제 11690호, 시행 2013,3,23]

제 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 하여 불가피한 경우
 -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 여 불가피한 경우
 -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 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 3자의 급박한 생명, 신 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 1 항제 1 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 를 받아야 한다.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 17 조(개인정보의 제공)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 3 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 2. 제 15 조제 1 항제 2 호 제 3 호 및 제 5 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 1 항제 1 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 3 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 2 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22 조(동의를 받는 방법)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 5 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 15 조제 1 항제 1 호, 제 17 조제 1 항제 1 호, 제 23 조제 1 호 및 제 24 조제 1 항제 1 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 2 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 3 항 및 제 18조제 2 항제 1 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 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 ⑥ 제 1 항부터 제 5 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 5 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23 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려하지 아니하다.

- 1. 정보주체에게 제 15 조제 2 항 각 호 또는 제 17 조제 2 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제 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 1. 정보주체에게 제 15조제 2항 각 호 또는 제 17조제 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 1 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안전행정부장관은 제 2 항에 따른 방법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의 정비,계획의 수립,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